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학대 신고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접수된 아동에 대해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시보호의뢰의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 등을 추가하고, 일시보호 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 주체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직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시 보호 의뢰서 발급 대상 확대(안 제19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 일시 보호 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는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함.

나. 일시보호 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 조사 주체 확대
(안 별표2)

보호대상을 일시 보호하는 경우 실시하는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의 주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을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5조제9항”을 “법 제15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일시 위탁의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를 “시·도 또는 시·군·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실시하거나,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로 하고, 같은 란 4) 중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를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

해아동쉼터,”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일시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아동일시 보호시설·일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일시보호 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일시”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아동 일시보호시설”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아동일시보호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① (생략)	제18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는 별표 2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법 제15조제6항 ----- ----- ----- ----- --.
③ 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 --- 제6항 ----- ----- ----- ----- ----- ----- ----- ----- -----.
제19조(일시 보호의 의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제19조(일시 보호의 의뢰) ----- ----- -- 법 제15조제6항 ----- ----- ----- ----- ----- -----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장, 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쉼터의 장 -----

는 일시 보호 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① <u>법 제15조제8항</u>에 따른 범죄의 경력 조회는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① 보장원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u>법 제15조제9항</u>에 따라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조치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 -----.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① <u>법 제15조제9항</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① ----- ----- <u>법 제15조제10항</u>-----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3384